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

2000. 9. 30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9. 2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 재 식)

가. 제안이유

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문의 삭제와
일부 조문의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수입증지 판매인 판매소 폐지신고 의무화 삭제(안 제11조2항)

○ 판매소의 위치중 민원실내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
직장금고에서 위탁판매를

→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위탁판매(안 제12조)

○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 삭제(안 제15조)

- 판매인의 장소 변경하였을 때와 사망하였을 때

-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아니하였거나 주소불명한 때
- 판매인이 무능력자인 때

○ 판매인 보유 수입증지중 오염, 훼손에 따른 증지교환시 그 원인 판매인의 고의·과실의 경우 교환 불가 조문 삭제(안 제2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)

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 이는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일부조문의 정비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제15조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와 제26조의 증지 교환에 관한 조문을 폐지시 증지판리의 방법과 제12조의 판매소의 위치 중 단서조항의 “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, 직장급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, 그 판매를 위탁판매 할 수 있다”라는 개정조문과 동 조례 제7조 3항의 소속 직원중에서 판매 적임자를 지정 판매 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의 차이점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: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중 “판매폐지” 및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중 “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”를 “소속기관
민원실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2항중 “제10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중 “지정”을 “신고”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, 별지 제10호 서식을
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9호 서식

월	일	카드 번호	금일까지 카드금액 (A)	전일까지 카드금액 (B)	금일결손(C)		금일발생 (A-B-C)		결재		
					매수	금액	매수	금액	계	담당	과장

※ 조성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11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, 판매폐지) ① (생략)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판매인의 경우, 위치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삭제)</p>
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</p>	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소속기관 민원실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</p>
<p>제15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</p> <p>1. 판매인의 판매장소(주소지)를 변경하였을 때 2. 판매인이 사망한 때 3.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.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</p>	<p>제15조 (삭제)</p>
<p>제20조(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 (생략)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 (현행과 같음) 제9호</p>

